

 <b>한국소비자원</b>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b>이 자료는 6월 27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6일(일) 12시]</b>		
<b>배포일</b> 2022년 6월 24일(금) (총 11쪽)	<b>담당부서</b> 경기지원 문화여행팀	<b>담당자</b> 정고운 팀 장(031-370-4731) 김남우 조정관(031-370-4738)

##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연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정산 분쟁 많아 장기·다회 계약에 주의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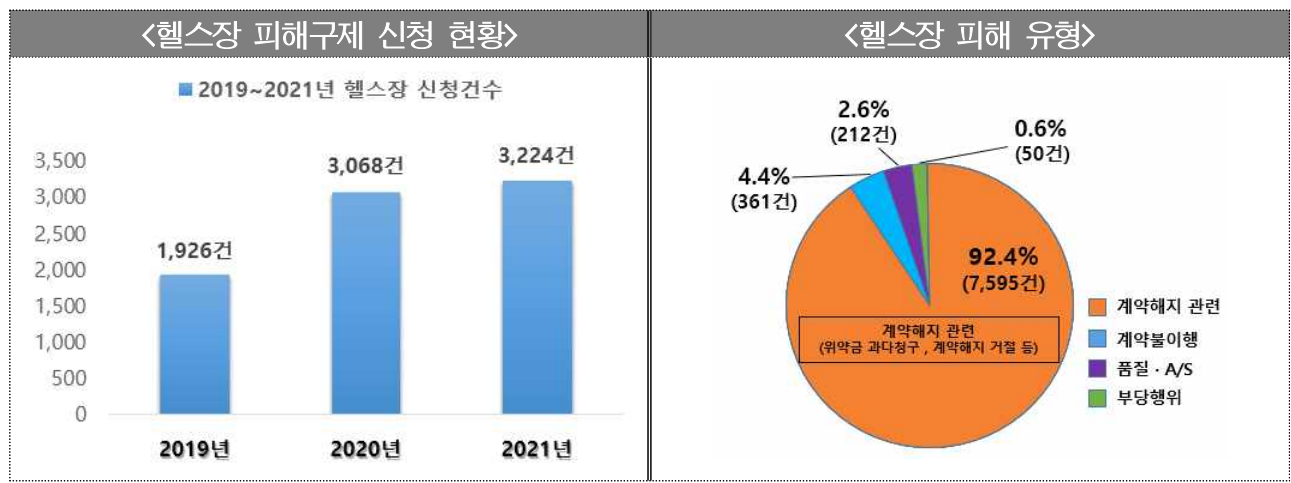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헬스장 이용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로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된 8,218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대부분이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시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는 행위



□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매년 약 40%씩 증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8,218건 중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이며,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545	787 (44.4)	1,108 (40.8)	2,440

PT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되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 **휴회 이후 해지 요구 시 이용료 정산 피해 증가**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21년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 휴회 이후 환급 시 이용료 정산 피해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139	170 (22.3)	341 (100.6)	650

사업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 사업자가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 구두로 휴회를 약정하여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 **헬스장 · PT 이용계약 시 장기 또는 다회 계약에 주의해야**

또한,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240건)로 확인되었고,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장 이용권 계약기간별 할인율〉					〈PT 이용계약 횟수별 할인율〉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구분	10회	20회	30회	50회
평균 계약금액	157,200(A)	320,900	427,500	700,000	평균 계약금액	549,800	1,038,100	1,381,300	2,059,200
1개월 환산금액(B)	-	106,900	71,200	58,300	1회당 환산금액	54,900(A)	51,900(B')	46,000(B')	41,100(B')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할인율(C)	-	32.0	54.7	62.9	1회당 환산금액 대비 할인율(C)	-	5.5	16.2	25.1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http://www.kca.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붙임 >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

### 1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 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전체 126,082건 중 헬스장 관련 신청은 8,218건(6.5%)으로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함.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년 59.3%, '21년 5.1%씩 증가함.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전체 건수	39,834	43,416	42,832	126,082
헬스장 (전년 대비 증가율)	1,926	3,068(59.3)	3,224(5.1)	8,218

※ 품목 분류 중 '헬스장·휘트니스'(이하 '헬스장')로 접수된 건 기준

#### 나. 피해구제 사례 분석

- (분석대상) 2019~2021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신청 8,218건
- (분석내용) 피해유형, PT 계약 여부, 계약기간(횟수), 결제금액, 휴회 피해 여부, 환급약관

####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4.4%(361건), 부당행위 0.6%(50건) 등의 순이었음.
- 계약해지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OT, 가입비 등)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2019	2020	2021	계(비율)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1,740	2,830	3,025	7,595(92.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16	123	122	361(4.4)
품질·AS 등	48	99	65	212(2.6)
부당행위	22	16	12	50(0.6)
계	1,926	3,068	3,224	8,218(100.0)

□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 매년 40% 이상 증가

- 피해구제 신청된 8,218건 중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총 2,440건으로 전년 대비 기준 20년 44.4%(242건), 21년 40.8%(321건)씩 증가했음.

[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9	2020	2021	계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	545	787(44.4)	1,108(40.8)	2,440

□ 장기·다회 계약 피해 많아

-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94.3% (3,24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개월 미만’ 은 5.7%(196건)였음.

[ 헬스장 이용권 계약기간별 현황(2020~2021년) ]

(단위 : 건, %)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계
건수 (비율)	196 (5.7)	1,158 (33.7)	757 (22.0)	1,325 (38.6)	3,436 (100.0)

-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49건을 분석한 결과, ‘10회 이상’ 계약이 98.3%(1,42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회 미만’ 은 1.7%(25건)에 불과함.

[ PT 이용계약 횟수별 신청 현황(2020~2021년) ]

(단위 : 건, %)

구분	10회 미만	10회 이상 ~30회 미만	30회 이상	계
건수 (비율)	25 (1.7)	606 (41.8)	818 (56.5)	1,449 (100.0)

□ 장기·다회 계약일수록 가격 할인을 높아

- 계약금액이 확인된 1,75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57,200원, 3개월 320,900원, 6개월 427,500원, 12개월 700,000원으로 나타남.
- 특히, 헬스장 이용계약을 6개월 이상 장기 체결 하는 경우, 1개월만 체결할 때에 비해 54.7~62.9%까지 큰 폭으로 가격 할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헬스장 계약기간별 금액 및 할인율 현황(2020~2021년) ]

(단위 : 원, %)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평균
평균 계약금액	157,200(A)	320,900	427,500	700,000	401,400
1개월 환산금액(B)	-	106,900	71,200	58,300	-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할인율(C)	-	32.0	54.7	62.9	-

※ 금액 : 10원 단위 절사, 계약기간 확인된 1,751건 분석,  $C=(A-B)/A \times 100$

- PT 이용계약의 경우도 30회~50회 계약을 할 경우, 10회만 계약할 때 보다 16.2%~25.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PT 이용계약 횟수별 금액 및 할인율(2020~2021년) ]

(단위 : 원, %)

구분	10회	20회	30회	50회	평균
평균 결제금액	549,800	1,038,100	1,381,300	2,059,200	1,257,100
1회당 환산금액	54,900(A)	51,900(B')	46,000(B')	41,100(B')	-
1회당 환산금액 대비 할인율(C)	-	5.5	16.2	25.1	-

※ 금액 : 10원 단위 절사, 계약횟수 확인된 930건 분석,  $C=(A-B)/A \times 100$

□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요금 정산 관련 피해 많아

- (휴회기간 공제)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휴회기간 공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650건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기준 20년 22.3%(31건), 21년 100.5%(171건)씩 증가하였음.

[ 휴회기간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9	2020	2021	계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139	170 (22.3)	341 (100.5)	650

(참고) 중도 해지 시 이용요금 정산식

소비자 귀책사유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 귀책사유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 :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

- (기준금액) 중도 해지 시 이용요금 정산과 관련하여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의 약관상 **별도로 정한 기준금액으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것이 주요 피해 원인으로 확인됨.
- 사업자 약관을 확인한 결과 **할인 전 가격(1개월 또는 1일, 1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임.

(예시1) 헬스장 이용계약 환불 약관

A 헬스장 약관	B 헬스장 약관	C 헬스장 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해지시 지급한 회비 합계 금액의 위약금 10% 및 등록 수수료(20,000원)가 공제됨.</li> <li>· 환불 요청 시 가입 당시 할인된 금액이 아닌 <b>정상가(1일 20,000원)</b>로 정산하여 공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자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b>1개월 정상금액(110,000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해지 의사표시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b>과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비 납부금액 10% 위약금 + 진행 처리 및 진행된 OT 수업료 + 지나간 일수(1개월 단위로 책정하며 132,000원씩 공제)를 공제 후 환불됨</li> <li>· OT의 경우 1회당 44,000원씩 공제</li> </ul>

(예시2) PT 이용계약 환불 약관

D 헬스장 약관	E 헬스장 약관	F 헬스장 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시일 이전) :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 개별 약정에 따른 공제 금액</li> <li>· (개시일 이후) :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 진행된 세션비용 (1회 정상가 110,000원) + 개별 약정에 따른 공제 금액</li> </ul> <p>* 개별 약정에 따른 공제 금액 :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 후 반환하는 부가상품의 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가입 시 기념상품을 받은 경우 상품을 반환하거나 상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li> <li>· 해지 시 할인가가 아닌 <b>정상금액</b>에서 위약금 10%가 공제되고, <b>면제된 가입수수료(88,000원)이 공제됨</b></li> <li>· 해지일까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b>정상금액(80,000원)을 공제 후 잔여금액을 환불</b>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레슨 환불은 1세션 기준 금액(88,000원)으로 정산되며, 위약금 10%가 발생됨. 또한, 프로모션으로 할인된 부분은 환불금에서 추가 정산됨.</li> </ul>

## 【사례1】 계약해지 및 환급 거절 후 양도 권유

A씨는 2022. 3. 16. 헬스장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95,000원을 현금 결제함.  
A씨는 2022. 3. 18.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291,500원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2022. 3. 21.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함을 주장함.

## 【사례2】 중도 해지 시 휴회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공제

B씨는 2021. 5. 1. PT 1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 5. 12.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고 880,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B씨는 개시일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2021. 5. 21.로 수업 시작일을 연기했다가 시작일 당일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함. 사업자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휴회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하고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함.

## 【사례3】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도한 금액 공제

C씨는 2022. 2. 22.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함.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알리자 신청인은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함.

## 【사례4】 트레이너 퇴사, 변경으로 인한 환급 요구 시 위약금 공제

D씨는 2021. 4. 12.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9회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자 D씨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대금의 10% 배상 및 잔여대금의 반환을 요청함.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 헬스장 계약 시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 예상치 못한 개인 사유(이사·건강상 문제 등)로 중도 해지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을 제시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 이용약관 및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중요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해지 시 공제 항목(카드수수료, 입회비, 부가세, OT 비용 등)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 헬스장·PT 이용계약 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한다.

\* (예시) 담당 트레이너 퇴사 시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환급 / 담당 트레이너가 늦거나 당일 취소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

□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 중도해지 시 휴회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휴회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 둔다.
-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 해지 의사표시 내용이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확보해둔다.

□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체 육시 설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해제</li> <li>○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li> <li>○ 배상액 배상</li> <li>○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li> <li>○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li> <li>○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li> <li>○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li> <li>·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li> <li>*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li> <li>*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 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은품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li> <li>·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li> <li>·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익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li> <li>·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li> <li>-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li> </ul> </li> <li>○ 체육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li> </ul> </li> </ul>		

※ 체육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비고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